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66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김병기 · 강득구 · 강선우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홍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김병주 · 김상욱 · 김성환
김성희 · 김승원 · 김영배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김원이 · 김 윤 · 김윤희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김 현 · 김현정 · 남인순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중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박 정 · 박정현 · 박주민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현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오기형 · 오세희 · 위성곤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균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이광희 · 이기현 · 이병진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현
이주희 · 이학영 · 이해식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최민희 · 추미애 · 한민수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황희의원(16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업무를 삭제함(안 제3조, 제17조 등).
- 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추가함(안 제4조).
- 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 라.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3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위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여”로 한다.

제2조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업무”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융위원회의 구성)”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9명”을 “금융감독위원회는 1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의2.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

제5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금융위원회의 운영”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 제2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은 위원장에게 제50조의14 각 호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를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제50조의7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 부원장, 부원장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

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금융”을 “금융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검사 및 제재 절차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및 제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 및 제재업무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금융감독원”을 각각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사”를 “조사 및 제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2명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로 한다.

제21조제3항 후단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장에 제5절(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제23조의2(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1.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범죄 피해 예방
2. 금융분쟁조정, 배상 등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3.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사무 중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 구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제23조의3(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2명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 또는 소비자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4(회의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5(조직·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의6(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제50조의14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

· 감독한다.

제24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업무”를 “업무 (제50조의14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검사·감독 업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4명”을 “3명”으로, “부원장보 9명”을 “부원장보 8명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원장보 1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를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를 “(이하 “금융감독부원장”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을 “(이하 “금융감독부원장보”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원의 감사(이하 “금융감독원 감사”라 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를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부원장·금융감독부원장보 및 금융감독원 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원장·부원장·부원장보와 감사”를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부원장·금융감독원부원장보와 금융감독원 감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부원장”을 “금융감독부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원장”을 각각 “금융감독부원장”으로, “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부원장보”를 “금융감독부원장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을 “금융감독원 감사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부원장”을 “금융감독부원장”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원장 등의 해임)”을 “(금융감독원장 등의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 및 감사”를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 감사”로,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원장”을 “금융감독부원장”으로,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원장보”를 “금융감독부원장보”로, “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32조의2 중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를 각각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부원장, 금융감독부원장보 또는 금융감독원 감사”로 한다.

제33조 중 “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를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부원장·금융감독부원장보 및 금융감독원 감사”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를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부원장·금융감독부원장보 및 금융감독원 감사”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원장은 부원장·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부원장·금융감독부원장보”로 한다.

제37조제1호 중 “검사”를 “검사(제50조의14제2호가목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 법과”를 “이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위원회와”를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9조에 따른 업무에 대한 지원 등 금융감독위원회와”로, “금융위원회 소속”을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0조의14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제39조제1항 중 “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면직·정직·감봉·견책”을 “정직·감봉·견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중 “원장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그 임원의 해임을 임

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를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 권고하거나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위원회에”를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로,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8조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0조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0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금융소비자보호원

제3장의2에 제1절(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통칙

제50조의2(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50조의3(사무소)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0조의4(정관)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의5(등기)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의2에 제2절(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제50조의7(집행간부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부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부원장보(이하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라 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임명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감사(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라 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0조의8(직무)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보좌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50조의9(대표권의 제한)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이익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직무를 대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한다.

제50조의10(금융소비자보호원장 등의 해임)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해임한다.

제50조의11(직원의 임면) 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임면한다.

제50조의12(준용규정) 금융소비자보호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와 직원에 대하여는 제32조의2,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금융감독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으로, “금융감독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로, “금융감독원 감사”는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로 본다.

제50조의13(대리인의 선임)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에 제3절(제50조의14부터 제50조의2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업무

제50조의14(업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2. 제1호의 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제17조제5호 및 제23조의2에 따른 업무에 대한 지원 등 금융감독
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50조의15(검사 대상 기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2.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3.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0조의16(규칙의 제정)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의17(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0조의15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50조의14제2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의18(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50조의15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0조의15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의19(임원의 해임권고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0조의15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하거나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의20(영업정지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0조의15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50조의21(회계 등)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회계 등에 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제50조의15 각 호의 기관”으로 본다.

제4장의 제목 “보칙 및 벌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5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독

제58조 중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①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37조제1호 및 제50조의14제2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중복 방지 등을 위해 해당 검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37조제1호 및 제50조의14제2호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제41조 및 제50조의18에 따른 조치

를 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 또는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제50조의14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관계기관 간 업무 협력

제62조의 제목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을 “(한국은행의 검사

요청)”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간 업무 협력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상호 간 협조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인사교류나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금융관련법령의 협의 및 제·개정 요청)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의 제목 “(원장의 협조 요청)”을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장”을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규칙 제·개정의 협의 요청)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50조의16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50조의16제1항에 따른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의3(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 업무 협력 등) 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 법의 목적 달성 또는 중복적 업무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협조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 간에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의4(공동검사 요구 등) 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제37조제1호 및 제50조의14제2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에 대하여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검사 과정에서 상대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위법 또는 부당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68조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제50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50조의6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69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증권선물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가.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	재정경제부장관
나.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금융감독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무	금융감독위원회
다.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소관 사 무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무	금융소비자보호원

②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가목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0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10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금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②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부원장, 금융감독부원장보 및 금융감독원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및 그 준비행위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분할하여 설립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준비행위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를 마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설립비용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부담한다. 다만, 설립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이 법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

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조(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다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행위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다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등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인계할 수 있다.

제8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기본재산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등의 처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될 때의 기본재산은 금융감독원을 분할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계하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 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계받는 기본재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 및 직원의 처우 및 복무관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부원장, 금융감독부원장보, 금융감독원 감사 및 직원의 처우 및 복무관계에 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례) ①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0 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50조의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5 조에 따른 예산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이 법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결산에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의2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8조 및 제2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

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마목, 제10조제2항제5호, 제21조제3항제3호,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호, 제29조제2항, 제33조제4호,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46조 및 제52조제5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가목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라목 중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같은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

다)”을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 소비자보호원의 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5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금융감독원장은 제외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외한다)”로, “금융위원회에”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2. 금융감독원장
3. 금융소비자보호원장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
2. 제42조에 따른 명령
3. 제46조에 따른 공표
4.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5.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⑥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8제2항·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⑦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5호 중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으로 한다.

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의3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⑪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로 하고, 같은 호 더목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⑫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으로 한다.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9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⑮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7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으로 한다.

⑯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으로 한다.

⑰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호·제5호·제6호,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6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 제40조의2제1호, 제40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7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4호, 제40조의13제1항·제2항, 제40조의15제2항, 제40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제5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2조의3제1항 본문, 제52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5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3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3호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40조의13제1항 중 “총리령으로”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기획예산처차관
3.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촉하는 사람 1명

6.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8.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제4조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재정경제부 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중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위원회(중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자금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제21조의2제3호가목 중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로 한다.

⑰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7조제1항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⑱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조의2제2항 본문, 제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에”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법률 제20713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을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위원회가”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0조제1항제11호 중 “금융감독원”을 각각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9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타목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③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8호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⑦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⑧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제33조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전단 및 제4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단서, 제36조제4항 및 제42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제6호, 제6조제6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 및 제15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

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제1항제6호 및 별표 제7호 중 “금융위원회의”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의”로 한다.

제6조제6항 후단, 제7조제1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㉓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31조 및 제34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호다목,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4제2항·제4항, 제9조의5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6제1항, 제9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8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9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10,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3조제3호, 제13조의2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14조의2제5항 전단·후단,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4, 제14조의6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

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 제1항·제3항, 제27조제4호, 제28조제1항제2호·제5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8호·제2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3호, 제23조의6제1항·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9제4항제3호·제4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5제2항, 제23조의6제5항, 제23조의9제1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3조의9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5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㉓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의2제5항,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32조제1

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53조 전단,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2항 본문,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3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5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5항제2호, 제33조, 제56조제3항·제4항, 제66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을 각각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5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1조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53조 전단, 제56조제1항·제2항, 제6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35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조정위원회 위원 중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을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위원을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원장은”을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자신이 위촉한”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 소속”을 “금융소비자보호원 소속”으로 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을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50조제6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의 방법·절차

등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나. 제53조에 따른 통보의 절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49조에 따른 명령

나.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다.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6조제1항·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한다.

③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제4조제2항·제6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

분 중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나목 단서,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4의 제목 중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㉟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13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5제3항·제4항·제6항, 제8조의6,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 단서, 같은 목 1),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단서, 같은 목 1),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1호, 제3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42조의2제2호, 제4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45조제4항 단서, 제45조의2제5항, 제45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5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본문·단서,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의2제1항, 제5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2조의2제4항, 제63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6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의2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제4호, 제72조제1항

제2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3제4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후단, 제55조의2 및 제63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호사목,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5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 본문, 제31조 및 제35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이 법”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 및 이 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0조 본문, 제32조 중 “금융감독원”을 각각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29조제6항 및 별표 제6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제4항제2호다목,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제5호, 제28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다목, 제30조제2항, 제30조의3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6조,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제3항, 제40조, 제43조제1항제24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제9호·제37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같은 법에

다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제2호, 제35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0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2호가목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항 중 “금융위원회와”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제46조, 제4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④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3항 전단·후단 및 제35조의3제3항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④⑪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④⑫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9항 중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8호,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④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⑭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의2제6호,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⑦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11조제4항 및 제32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④⑧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61조의11제6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6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62조제6항, 제16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68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④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⑤⑩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3조제1항 전단, 제86조제1

항 단서,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제2항·제3항, 제93조제2항,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04조, 제10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총리령으로”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이 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5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2호 전단, 제7조의3제1항, 제9조의3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8항, 제11조의2제5항, 제13조제2항제2호의3,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제1항, 제15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전단, 제18조의5제1항 단서, 제1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12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7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같은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

8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원”을 각각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7(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및 협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11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3(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분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는 경우
2.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의 방법·절차,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명령·처분 등을 하는 경우
 - 가.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 나.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 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 라. 제14조의2,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
 - 분
 - 마.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바. 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조치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5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56조의2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6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5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5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4항, 제6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71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60>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6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

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2>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4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 제2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5조의3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

항·제4항, 제87조제1항·제3항, 제87조의3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89조의3제2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3항, 제9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0조제4항, 제102조의6제1항, 제102조의7제6항, 제105조제6호, 제106조제1항제9호, 제107조제1항제3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8조제1항제4호, 제109조 단서,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 제114조의5제1항·제2항·제3항,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16조제3호, 제117조 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3항, 제121조의2, 제122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6조, 제1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제2항, 제128조의2제3항, 제128조의3제1항제3호, 제12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1조의2, 제133조제1항·제5항,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7조제2항, 제139조, 제140조제2항 단서, 제14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 제169조제1항, 제171조제1항, 제17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81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8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86조제1항·제3항, 제187조제1항·제4항, 제191조,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제3항, 제194조제3항 제19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09조제6항제39호 및 같은 조 제9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4조,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1조의2제5항, 제182조제2항, 제183조제3항, 제186조제2항, 제187조제3항 중 “총리령으로”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3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1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3조제3항 · 제5항 · 제6항, 제134조제1항 · 제3항, 제135조제1항, 제194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6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 제2항,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 후단, 제4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6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6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9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금융감독원 직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을 각각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6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항 전단,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9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6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69>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제5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92조제2항 후단, 제119조제2항제3호 및 제123조제1항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23조제3항, 제12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7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71>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7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7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2조제8호마목,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제6조의3,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6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8항, 제11조제1항제14호·제16호, 제12조제1항·제6항·제7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5조,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호·제2호·제4호,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8조의3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제18조의6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5제3항,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제2항, 제2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제1항, 제2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4조의11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의13, 제24조의15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9,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3제1항, 제38조,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38조의8제1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의2·제5호·제1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리령으로”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2조5제1항, 제24조의14 중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를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로 한다.

제22조의5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

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23조의3제4항 중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76>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4항 및 제81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7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제11조제3항·제4항, 제49조제2항, 제61조제6항, 제80조제2항 본문, 제86조제1항제6호·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79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전단, 제11조제2항, 제20조제4항제9호, 제61조제2항, 제61조제3항제8호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5호 중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3항·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7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제44조제7항 전단·후단,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5조의2제3항, 제55조의3제4호 및 제60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7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47조 후단, 제49조제1항 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65조제1항제15호 및 제66조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80>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8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2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8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41조의4제3항 단서, 제141조의5제2항 후단, 제141조의9제8항, 제144조제1항제4호, 제16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72조제1항제5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7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74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85>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8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51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8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4제4항, 제42조, 제4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법률 제20895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23조의3제5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하며, 제23조의6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8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제9호·제10호, 제4조제2항·제3항·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6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1호 단서, 제22조의2,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3항·제4항, 제26조의4제1항,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8항·제9항·제10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제38조의2제1항 후단, 제38조의3제4항, 제39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0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제41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3조의3,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6항·제8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5제1항·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9조, 제50조제4항제1호·제6호,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제2의2호·제2의3호·제2의4호·제7호, 같은 조 제6항 본문, 별표 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27조제11항 중 “총리령으로”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항 중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금융위원회 또는”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를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항·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5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49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
 - 가. 제45조의2에 따른 명령
 - 나. 제52조제1항부터 제7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2.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

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 제27조의2제2항제5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의3제4항제1호 라목, 같은 항 제3호, 제78조제5항, 제80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4항, 제8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83조의2, 제8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6조의2제4항·제5항, 제86의3제1항, 제8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86조의5제6항 전단·후단,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9조제3항·제4항·제5항·제8항, 제96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98조, 제99조제2항제4호 및 제101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 중 “총리령으로”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3호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3조제2항·제3항, 제8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8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및 제96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83조제5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9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9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9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94>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3·제8호의3·제10호의2·제13호의2·제14호의3·제15호·제16호, 제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제1호·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2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 제1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의5제4항·제5항·제7항, 제16조의2제3항,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5항·제6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4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50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50조의2제4항, 제50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10제3항,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2제1항·제2항, 제54조의3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의4제2항·제3항,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5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제7항·제8항·제9항, 제5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61조, 제62조제3항, 제69조의2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제34호·제37호·제43호·제45호·제48호·제53의2 및 제56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호, 제45조 및 제49조제1항제3호 중 “총리령으로”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 제27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3조제5항, 제5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95>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다목, 제21조제7항 전단·후단, 제35조의8제3항, 제36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23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2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의4,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6조의7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재정경제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5. 한국은행부총재

6.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

제15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3호, 제36조의5제1항, 제44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중 “금융위원회가”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9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98>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원”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
장,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감독원장”
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9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
1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1호, 제23

조제2항제3호,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까지,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3항·4항 및 제48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10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0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02>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0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2.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04>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10조제1항·제3항제5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5조의3제3항 · 제4항 · 제6항, 제15조의4,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 1) · 2)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1),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1) · 2)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1),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1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5항 본문 · 단서, 제16조의3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5항 · 제6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의2제5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34조의3제3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35조의2제5항, 제35조의3제2항 · 제5항, 제35조의5제1항 · 제2항 · 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8조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호,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3조의3, 제43조의4제2항, 제44조,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 단서, 제5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 후단, 같은 조 제5항 · 제6항, 제52조의2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1조제2항, 제62조제3항 전단·후단,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5조의2,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5제1항·제2항, 제65조의6제1항 본문, 제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5조의9제1항·제3항, 제65조의10제1항·제2항, 제65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제2항, 제54조의2제1항, 제65조 및 제65조의2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10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0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제5항, 제17조제3항제2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 및 제26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107>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0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단서, 제8조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3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별표 구분란 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란 같은 호 가목·나목, 같은 란 같은 호 마목 단서, 같은 란 같은 호 같은 목 1) 단서, 같은 란 제4호 가목·나목 및 같은 란 제6호 가목·라목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09>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4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감독원의 원장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원”을 각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1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2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9호 중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1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항, 제8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

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36조,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제5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74조제6항·제7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3항·제5항제3호, 제81조제2항, 제87조제6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3조제2항, 제9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0조제5항, 제10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제6항, 제1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6조제3항, 제117조의4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7조의6제1항, 제117조의7제8항, 제117조의11제2항, 제117조의15제1항제2호·제2항, 제119조제1항·제2항, 제1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22조제1항,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 제128조,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1조제1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4조제2항, 제136조제1항·제3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2항, 제139조제2항, 제143조,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 제1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7조제1항·제4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제3항, 제151조제1항·제2항, 제153조·제155조, 제156조제1항, 제157조, 제1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0조제1항·제2항,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5조제3항·제4항, 제165조의4제3항, 제165조의6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65조의7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5제1항제2호, 제165조의16제1항, 제165조의17제1항·제3항, 제165조의18, 제16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66조의2제2항, 제167조제2항·제3항, 제168조제3항, 제169조제1항·제2항, 제173조의2제1항, 제180조제3항, 제18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0조의3제2항, 제180조의5제2항, 제182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182조의2제1항·제3항, 제190조제3항, 제191조제3항, 제19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3조제5항·제6항,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03조제1

항·제2항·제5항·제6항, 제206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제217조제1항, 제217조의7제1항,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3조제1항, 제238조제8항, 제239조제6항, 제2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47조제3항·제4항, 제248조제2항, 제249조의3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49조의4제6항·제7항, 제249조의5제2항, 제249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9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9조의10제4항·제5항·제6항, 제249조의11제8항, 제249조의12제2항, 제249조의14제7항·제12항, 제249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9조의19제2항, 제249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9조의22제6항, 제249조의23제5항, 제252조의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4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8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3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9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7조제2항, 제290조, 제2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7조, 제305조제3항,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3조의3제1항, 제323조의4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3조의5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23조의7, 제323조의10제1항제6호, 제323조의11제3항제8호, 제323조의16제2항, 제323조의18제2호, 제323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4조제1항·3항·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5조의3제1항, 제335조의4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5조의5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35조의10제3항, 제335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제4항, 제335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5조의13제2항, 제33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7조, 제3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2조제6항, 제34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4조제2항, 제345조제4항, 제3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5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7조제4항, 제3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0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5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3조의3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3조의4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제373조의6, 제376조제2항, 제3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2호, 제378조제1항 · 제2항, 제380조제4항, 제392조제3항 · 제4항, 제402조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0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8조, 제409조 제1항 · 제2항, 제410조제1항 · 제3항,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3조, 제415조, 제4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9조제4항 · 제7항 · 제9항,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25조제1항 · 제2항, 제4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8항, 제4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7조제1항, 제427조의2제2항, 제4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1조제1항·제2항, 제43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4조의2제1항·제2항, 제434조의3, 제43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35조제1항·제2항·제4항·제7항, 제436조제1항, 제43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38조제4항, 제4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3호, 제440조제1항·제2항, 제442조제1항, 제445조제13호·제48호, 제446조제24호, 제448조의2제2항, 제449조제1항제39호·제4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별표1 제17호·제86의2·제151호·제177의3·제298호, 별표2 제11호, 별표3 제11호, 별표4 제11호, 별표5 제12호, 별표6 제15의2, 별표7 제11호, 별표9 제11호·제

12호 및 별표15 제목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3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의2제7항, 제1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제6항, 제80조제3항·제4항, 제100조제2항, 제117조의4제5항, 제120조제1항,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호, 제132조, 제133조제5항, 제136조제3항, 제137조제1항, 제146조제2항, 제147조제2항, 제153조,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제165조의18, 제182조제5항, 제203조제1항, 제235조제2항, 제247조제7항, 제249조의3제5항, 제249조의15제4항, 제254조제5항, 제258조제5항, 제263제5항, 제309조제3항제3호, 제310조제1항제3호, 제312조제3항, 제318조제1항, 제323조제1항·제2항, 제323조의4제3항, 제323조의5제3항, 제324조제5항, 제330조제1항·제2항, 제335조의4제3항, 제335조의5제3항, 제355조제5항, 제360조제5항, 제365조제5항, 제373조의3제3항, 제373조의4제3항 중 “총리령으로”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소비

자보호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제166조의2제3항, 제249조의14제13항, 제419조제1항·제5항·제7항·제8항, 제436조제1항, 제438조제4항, 제440조의 제목·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제4호 및 제326조제2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로부터”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96조제3항제1호, 제299조제2항, 제301조제2항, 제32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의”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3조의11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1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 중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제332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의”를 “재정경제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3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재정경제부장관(제331조제2항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에게” 한다.

제40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2인”을 “1인”으로 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제412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4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재정경제부에”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4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

를 “재정경제부 장관,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제3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441조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1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하목, 제3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9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33조의3제1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5조,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3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감독원의 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으로 하며,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1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금융위원회는”은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1항, 제14조,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을 각각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감독 및 검사) ①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회사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등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4.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5.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제15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5조의2제7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

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5조의2제7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4(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5(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15조2제6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의 방법·절차 등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나. 제15조의3에 따른 통보의 절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2조2제2항에 따른 권고·요구·명령 또는 개선계획 제출 명령

나. 제15조2제1항에 따른 명령

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호, 제41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3항제1호,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5제1항, 제2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25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의2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제34조제2항 ·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제40조제1항 · 제2항 · 제3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2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제46조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제46조의2제1항 · 제2항 · 제3항, 제48조, 제5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금융위원회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제40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1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9조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2항 본문·단서, 제1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후단, 제16조 전단·후단, 제17조 전단·후단, 제18조 본문·단서,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5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

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58조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7조제2항 후단, 제69조, 제75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8조제1항 전단, 제69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2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후단, 제17조 후단,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예비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3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7호나목, 제9조제2항, 제25조제2항·제6항, 제31조제8항, 제34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후단 중 “총리령으로”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6조제2항, 제29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 전단·후단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24> 주택도시금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2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2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2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8조, 제33조제10호,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2 전단, 제37조제3항 및 제49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을 “중소기업은행이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업무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9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29>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3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3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및 제57조의2제10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7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률 제00000호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관받아 취득하는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3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2조, 제120조제1항 전단, 제183조, 제226조제1항·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35>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으로 한다.

<13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7>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마목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3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13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로 한다.

제7조제8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

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14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41>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4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 제21조 전단,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의3제2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9조의3제2항제1호, 제3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1048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2항제9호, 같은 항 제10호, 제29조의8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제3항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42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14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89조제1항·제2항, 제91조 본문·단서, 제94조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4호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를 “재정경제부의”로, “금융위원회가”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에 제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2의2.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1명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의2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30조제3항, 제40조제5항 및 제4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4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9의3제5항제4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4호, 제34조제2항, 제45조제7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9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제4호 및 제5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68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59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6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62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14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한다.

<14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50>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6제1항제4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후단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후단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5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및 제19조제1항제7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5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5 및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

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위원회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15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5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5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	<u>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금융위원회</u>와 <u>금융감독원</u>을 설치하여 <u>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u>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여</u> ----- ----- ----- ----- ----- -----.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u>금융위원회</u>와 <u>금융감독원</u>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u>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u>----- ----- ----- -----.
제2장 <u>금융위원회</u>	제2장 <u>금융감독위원회</u>
제1절 <u>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u>	제1절 <u>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u>
제3조(<u>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u>) ① <u>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u>	제3조(<u>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u>) ① <u>금융감독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업무</u>-----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
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
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다.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
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
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생략)

<신설>

3.·4. (생략)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
는 금융 전문가 2명

6. (생략)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
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금융감독위원회---.

② 금융감독위원회-----

-----.

제4조(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10명-----

-----.

1. 재정경제부차관

2. (현행과 같음)

2의2.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

3.·4. (현행과 같음)

5. 금융감독위원회 -----

6. (현행과 같음)

②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 금융감독위
원회 부위원장-----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생략)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 ① ----- 금융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감독위원회-----.

② -----

----- 금융감독위원회-----.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금융감독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제11조(회의 등) ①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2. (생략)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결산 및 정관 변경 등

제2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

제11조(회의 등) ① 금융감독위원
회-----

-----.

-----.

② 금융감독위원회-----

-----.

③ 금융감독위원회 -----

-----.
-----.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

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생략)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⑤ -----

-----.
----- 금융감독위원회-----
-----.

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감독원 원장-----

-----.
-----.

⑧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은 위원장에게 제50조의14 각 호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13조(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

-----.

②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1.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의견 청취) 금융감독위원회-----
--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제50조의7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 부원장, 부원장보 -----.

제14조(긴급조치) ① -----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

② -----
----- 금융감독위원회-----
-----.

③ 금융감독위원회-----

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u>금융위원회의</u>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금융위원회</u>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u>금융위원회의</u>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u>삭 제</u> ③ 위원장은 <u>금융위원회</u>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u>금융위원회</u>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u>금융위원회의</u>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금융위원회의</u>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u>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u> 제17조(<u>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u>) <u>금융위원회의</u>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u>금융감독위원회</u>----- ----- <u>금융감독위원회</u> ----- <u>금융감독위원회</u>----- -----. ③ ----- <u>금융감독위원회</u>--- ----- <u>금융감독위원회</u> ----- -----. 제16조(운영 등) ----- ----- <u>금융감독위원회</u>----- -----. 제3절 <u>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u> 제17조(<u>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u>) <u>금융감독위원회</u>----- -----.
---	---

<u>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u>1.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u>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u>	<u><삭 제></u>
8. <u>금융</u>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u>금융감독</u> ----- -----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u>금융위원회</u> 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10. ----- <u>금융감독위원회</u> ----- --
<u><신 설></u>	<u>제17조의2(검사 및 제재 절차 등)</u> <u>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및 제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 및 제재업무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u>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생략)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제18조(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

1.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2.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3. -----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

----- 금융감독위원회-----
-----.

1. ----- 조사
및 제재
2. (현행과 같음)
3. 금융감독위원회 -----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u>금융위원회</u>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생략)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u>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u> 1. ~ 3. (생략) ③ ~ ⑥ (생략) 제21조(회의 등) ①·② (생략) ③ <u>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u>	4. ----- ----- <u>금융감독위원회</u>----- 5. (현행과 같음)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2명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u>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조제5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
회”로 본다.

제22조(조직·규칙 등) ① 이 법
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
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
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

제22조(조직·규칙 등) ① -----

----- 금융감독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금융감독위원회-----
-----.
-----.

제5절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제23조의2(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
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1.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
융범죄 피해 예방
2. 금융분쟁조정, 배상 등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

<신 설>

3.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사무
중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 등과 관련된 주
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
소비자보호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제23조의3(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의 구성) ① 금융소비자보호위
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
임으로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
장이 겸임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은 재정경

제부장관의 추천으로, 2명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 또는 소비자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

<신 설>

<신 설>

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4(회의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5(조직·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소비

<신 설>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u>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u>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u>검사·감독 업무</u>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생략) 제26조(정관) ① (생략)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	<u>자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u> ② <u>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u>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 <u>제23조의6(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제50조의14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한다.</u>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u>금융감독위원회</u>----- ----- ----- <u>업무(제50조의14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검사·감독 업무는 제외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원장 ·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 금융감독위원회-----
-----.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
----- 3명 -----
-- 부원장보 8명(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원장보 1명을 포함한다) -----
-----.

② -----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

③ ----- (이하 “금융감독부원장”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이하 “금융감독부원장보”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
-----.

④ 금융감독원의 감사(이하 “금융감독원 감사”라 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⑤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부원장 · 금융감독부원장보 및 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부원장·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0조(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 감사-----
-----.

⑥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부원장·금융감독부원장보와 금융감독원 감사-----
-----.

제30조(직무) ① 금융감독원장-----
-----.

②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부원장--금융감독원장-----.

③ 금융감독부원장--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부원장보--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부원장-----.

④ 금융감독원 감사는 -----
-----.

제31조(대표권의 제한)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 4. (생략)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

부원장-----.

제32조(금융감독원장 등의 해임)

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 감사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1. ~ 4. (현행과 같음)

② 금융감독부원장-----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

③ 금융감독부원장보----- 금융감독원장-----.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

-----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부원장, 금융감독부원장보 또는 금융감독원 감사-----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부원장, 금융감독부원장보 또는 금융감독원 감사-----

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u>원장</u> 이 임면(任免)한다.	제33조(직원의 임면) ----- <u>금융 감독원장</u> -----.
제34조(겸직의 제한) <u>원장·부원 장·부원장보 및 감사</u> 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 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34조(겸직의 제한) <u>금융감독원 장·금융감독부원장·금융감독 부원장보 및 금융감독원 감사</u> - ----- ----- -----.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u>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u> 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 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u>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u> 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u>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부 원장·금융감독부원장보 및 금 융감독원 감사</u> ----- ----- ----- -----. ② <u>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부 원장·금융감독부원장보 및 금 융감독원 감사</u> ----- ----- ----- -----.
제36조(대리인의 선임) ① <u>원장은 부원장·부원장보</u> 또는 직원 중 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 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제36조(대리인의 선임) ① <u>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부원장·금 융감독부원장보</u> ----- -----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7조(업무) ----- ----- -----.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u>검사</u>	1. ----- ----- 검사(<u>제50조의14제2호가목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u>)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u>이 법과</u>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2. ----- --- <u>이 법</u> ----- -----
3. <u>금융위원회와</u>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u>금융위원회 소속으로</u>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3. <u>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9조에 따른 업무에 대한 지원 등 금융감독위원회와 --- 금융감독위원회 소속</u> ----- -----
<u><신 설></u>	<u>3의2. 제50조의14에 따른 금융 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39조(규칙의 제정) ① <u>원장은</u>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39조(규칙의 제정) ① <u>금융감독원장</u> ----- -----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

금융감독위원회-----
-----.

③ 금융감독위원회-----

-----.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금융감독원장-----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금융감독원장-----

-----.

1. (생략)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생략)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신설>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

1. (현행과 같음)

2. ----- 금융감독원장-----

3. (현행과 같음)

4. 금융감독원장-----

② ----- 정직·감봉·견책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 권고

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2. (생략)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하거나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영업정지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

-----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 명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

----- 금융감독위원회-----.

② -----

----- 금융감독위원회-----.

③ -----

--- 금융감독위원회-----

---.

④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분담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
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
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생략)

제48조(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
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
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
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

제47조(분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금
융감독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차입) -----
----- 금융감독위원회-----

-----.

제50조(잉여금의 처리) -----
----- 금융감독
위원회-----
-----.

제3장의2 금융소비자보호원

제1절 통칙

제50조의2(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

<신 설>

<신 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50조의3(사무소)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0조의4(정관)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의5(등기)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 설>

제50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2절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신 설>

제50조의7(집행간부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

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부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부원장보(이하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라 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임명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감사(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라 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금융소비자

<신 설>

<신 설>

보호부원장보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0조의8(직무)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보좌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50조의9(대표권의 제한)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이익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신 설>

사항에 관하여는 직무를 대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한다.

제50조의10(금융소비자보호원장 등의 해임)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해임한다.

<신 설>

제50조의11(직원의 임면) 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임면한다.

<신 설>

제50조의12(준용규정) 금융소비자보호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

<신 설>

<신 설>

<신 설>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와 직원에 대하여는 제32조의2,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금융감독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으로, “금융감독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로, “금융감독원 감사”는 “금융소비자보호원 감사”로 본다.

제50조의13(대리인의 선임)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업무

제50조의14(업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신 설>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2. 제1호의 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제17조제5호 및 제23조의2에 따른 업무에 대한 지원 등 금융감독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50조의15(검사 대상 기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신 설>

<신 설>

의 기관

2.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3.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0조의16(규칙의 제정)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의17(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0조의15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신 설>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50조의14제2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의18(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50조의15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신 설>

<신 설>

한 경우

4.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시정 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0조의 15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의19(임원의 해임권고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0조의15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하거나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의20(영업정지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0조의15 각 호의

<신 설>

제4장 보칙 및 벌칙

<신 설>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 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50조의21(회계 등)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회계 등에 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제50조의15 각 호의 기관”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절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독

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0조(보고·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제58조(자료의 제출)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①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37조제1호 및 제50조의14제2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중복 방지 등을 위해 해당 검사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37조제1호 및 제50조의14제2호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제41조 및 제50조의18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 또는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보고·검사 등)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
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
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 금융감독위원회-----

-----.

제61조(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명령
권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 증권
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
호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또는 금
융소비자보호원-----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
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
호원-----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제
50조의14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처분이 위
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 설>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① ~ ③ (생 략)

제65조(자료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관계기관 간 업무 협력

제62조(한국은행의 검사요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간 업무 협력 등) ①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상호 간 협조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인사교류나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감독위원회-----

-----.

② 금융감독위원회-----

-----.

제65조의3(금융관련법령의 협의 및 제·개정 요청)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소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비자보호원장의 협조 요청)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

--.

제67조의2(규칙 제·개정 의 협의 요청)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50조의16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50조의16제1항에 따른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의3(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 업무 협력 등)
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

<신 설>

호원은 이 법의 목적 달성 또는 중복적 업무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협조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 간에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의4(공동검사 요구 등) 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제37조제1호 및 제50조의14제2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에 대하여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검사 과정에서 상대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위법 또는 부당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장 벌칙

제68조(벌칙)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의2(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제68조(벌칙) 제35조제2항(제50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6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생략)

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부과한다.

1.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50조의6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 금융감독위원회-----.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감독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③ (생략)

제7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② -----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감독위원회 -----

----- 금융감독원장-----.

②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